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77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부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 가. 제안이유

- 서울혁신센터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사업명 : 서울혁신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 시설규모 : 29개동 연면적 48,898.47㎡
- 운영인력 : 89명
- 위탁기간 : 3년(2021.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7,823백만원(2021년)

### 나)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 2015. 4. 1. ~ 2018. 3.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재위탁
  - 위탁기간 : 2018. 4. 1. ~ 2020. 12.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활동단체를 지원·연계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2014년 12월 최초 동의)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 개정(2019.3.)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음.
  - ※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혁신 활동가들이 모여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활동 단체 운영을 위한 서울 혁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혁신과 관련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서 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서울혁신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혁신센터 개요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규모	29개동 연면적 48,898.47㎡
인력 및 조직	<p>○ 조직구성 : 2실, 1소, 15팀, 1사업단, 8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규 직: 77명 (사무 26, 시설관리 51)</li> <li>- 비정규직: 12명 (전략사업 PM 등)</li> </ul> 
소요예산	7,548백만원(2020년)
민간위탁	2018년 4월(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

- 서울혁신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 ('21. 1. 1. ~ '23.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대상 : 서울시 혁신정책에 부합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가능한 혁신 관련  
고등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추진절차



##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여 파크 관리 및 혁신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sup>2)</sup> 최초로 2015년 4월, 민간에 위탁(사단법인 데어)하였으며, 동 센터가 중도에 법인 이사들의 퇴임으로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표명(2017년 10월 17일)했으나, 2018년 4월 협약기간까지 동 사무를 수탁하였고,
- 2018년 4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동 사무를 수탁하여 협약 만료 시점(2020년 12월) 이 도래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일부 기관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동 사무의 재위탁(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2014.10.27.
- 서울시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4.12.19.
-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2015. 4.13.  
- (사)사회혁신공간테어(위탁기간 : '15. 4. 1~'18. 3.31)
- 서울혁신센터 재위탁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 4. 1.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혁신플랫폼협동조합 컨소시엄(위탁기간 : '18.4.1~'20.12.3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 2020. 5.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의결 : 2020. 6.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선정 : 2020. 7. ~ 9.
-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및 협약서 체결 : 2020.10.~11.

○ 서울혁신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 센터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한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시장의 다양성, 사업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3년의 계약과 재계약(3년) 이후 재위탁(공모)을 통한 공개 경쟁으로 위탁을 진행하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9. 3. 28.>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동 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협약 해지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동 사무를 수탁 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조건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롭게 사무를 구성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sup>3)</sup> (2017.2.6.)되었으나,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상정 유보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바 있음.

3)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

〈서울혁신파크 사무 분리위탁(대행) 체계〉

구 분	혁신활동지원 사무		시설관리 사무
기 관 명	서울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분리위탁 전	분리위탁 이후	
위탁(대행) 기간	2015.4.13.~2018.3.31	2017.5.1.~2018.3.31	2017.5.1.~2022.4.30
위탁(대행)금	8,517,000천원	5,194,000천원	3,323,000천원
운영인력 (2017년 기준)	사무직 18 시설관리인력 50	사무직 18	시설관리인력 50
사무구분	혁신활동 지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혁신활동 지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혁신파크 전반의 시설관리와 혁신센터의 혁신활동 사무의 분리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공정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 타당성 조사<sup>4)</sup> 보고서에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리기업 등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이며,

4) 서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20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쪽

### 〈서울혁신파크 입주협약단체 유형별 현황〉

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개인 및 임의단체	사단법인/ 유한·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118 (7)	19	3	55(5)	20(2)	21

- 동 조사에 따르면, 혁신단체 지원공간의 궁극적인 편익은 혁신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 개별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 한편, 서울혁신파크는 기회비용관점에서 지역개발 유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정체 또는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셋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없음**

-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 없음

- 동 센터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5)”등과 일정 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 또한, 각 민간위탁기관별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의 위탁사무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비전 및 목적

### 국내 최초의 혁신가들의 집적 공간 · 글로벌 사회혁신 플랫폼

혁신가가 모여드는 혁신파크	시민에게 열려있는 혁신파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파크	지속 가능한 혁신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혁신 네트워크·커뮤니티발굴</li> <li>▶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구축</li> <li>▶ 일하기, 협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사회혁신 정보, 교육 제공</li> <li>▶ 방문, 이용하고 싶은 공간 환경 조성</li> <li>▶ 지역 민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체감, 사회혁신 성공모델 창출</li> <li>▶ 사회혁신 프로젝트 아카이빙, 송출</li> <li>▶ 성과측정, 사회적 영향력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블랜딩</li> <li>▶ 지속가능 운영구조 마련</li> <li>▶ 성장 경로 설정</li> </ul>

## □ 입주단체 유치 실적

(‘20.4.1 현재 / 단위: 단체수)

총 계	서울혁신센터 관리(입주협약)						중간지원 조직 내 입주단체	기타
	합 계	미래청			상상청	중소 건물		
		소계	개별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246 (8)	125 (8)	93	51	42	18 (1)	14 (7)	102	19

※ ( )는 중복 입주단체 수, 중복단체 제외시 서울혁신센터 관리 117개, 전체 238개 단체임

## □ 사업분야별 실적(2019년도)

### 1) 입주단체 커뮤니티 지원 등

- 자치회 운영
  - 자치회 거버넌스 : 총회(1회), 운영위원회(6회), 자치회-센터 정기협력회의(12회)
  - 네트워크 활성화 : 파크 얼라이언스 9회
-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혁신파크 대시민프로그램 TF 조직운영
- 입주단체 유치 및 육성 혁신 Wifi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교육 수시개최
- 혁신성과 전람회 : 500여 명 참여(하루부스, 대토론회, 이노베이션로드 개최)

### 2) 공간 활성화

- 사회혁신 전문가 오픈데이블 운영 : 9회 개최, 1,528명 참여
-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 공공식탁 ‘한끼’ 개최 : 2회, 320명 참여
  - 작은 비건페스티벌 ‘일상비건’ 개최 : 1회, 1,000명 참여
  - 전시회·영상회 ‘상상비건’ 개최 : 5일, 100명 참여
-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 8개 팀 접수, 3개 팀 선정

- 상상플레이그라운드 워크 운영(사회혁신 페스티벌 등 추진)
- 시소 <팝업놀이터> 트리클라이밍 등 체험 프로그램 : 700여명 참여
- 이타서울 <RACEUP! 서울자원레이스> : 86개팀, 215명 참여
- 빅이슈코리아 <2019 제2회 다양성컵> 길거리 축구대회 개최

### 3) 대외협력

-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 핏인데이 : 4회, 261명 참석, IR기업 29개(내부16, 외부13), 자원연계 3건
  - 외부단체 발굴·관리 : 346개(민간기업167, 사회적기업72, 공공 및 재단 92, 기타15)
  - 외부자원 연계 : 협약체결 2건, 자원 연계 3건
  - 중간지원조직 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 14개 단체 참여
  - 지역거점 사회혁신공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16개 기관 참여(혁신파크포럼 개최, MOU체결 등)
  - 공동행사 협력운영 : 행정안전부 커먼즈필드 협력 개최(전주, 춘천)
  - 아시아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 : 대만, 홍콩, 일본 관계기관과 자원연계, 교류간담회, 사업홍보, MOU 체결 등
- 지역협력 사업
  - 지역혁신 협력 플랫폼 운영 : 지역사업 제안 접수, 은평구·市 사업으로 추진  
협력워크숍 공동행사 운영 3회
  -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연계사업 : 68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 월례회의, 4회 은평상상컨퍼런스 공동운영 등,  
(1천명, 15개 분야 논의, 21개 대화테이블, 35개 단위 추진위원회, 28회 간담회, 사업결과자료집 발행 등)
  - 지역사회 설문조사(사회혁신 인식조사) 실시
- 협력인프라 구축
  - 서울혁신파크 자문위원회 운영, 비전 워크숍 개최, 협력거버넌스 운영 등
- 글로벌 혁신협력
  - 글로벌 사회혁신연수프로그램 2회 운영(10월, 12월)
  - 네덜란드 폰티스 대학, 빈데스하임대학과 교류 추진(수시, 온라인 등)
  - 해외기관 방문코스 운영 : 16개 기관, 356명

### 4) 대표전략 프로젝트 운영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 LH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제로에너지 파크 업무협약(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LG전자)
- 공유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공유공간 조성 및 기관연계(전주, 춘천, 대만), 옥상공유지 글로벌네트워킹 업무협약(열린옥상)
- 메이커교육프로그램 운영
  - 목공동 : 운영협의회 2회, 정기교육(125회 276명), 워크숍(33회, 751명)
  - 대체 이동수단(자전거)
    - ▶ 리사이클링 교육(16회, 200명), 약속의자전거 회원(250명), 자전거정비사 자격증반(12회, 30명),  
자전거클래스(3회, 70명),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100회, 2,000명), 핑크수리워크숍운영(4회, 25명),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4회, 400명), 지역동호회운영(4개 단체, 3회), 기타 도심형이동수단 발굴행사  
(전동킥보드 등 4회)

○ 이노베이션팹랩

- 국내 최초 팹랩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 ▶ 국내 13개도시·해외65개도시150명 참가, 시민 3,000여 명 참석
  - ▶ 팹시티 캠퍼스 운영 : 7개 주제 관련 20개 제작 단체 참여 및 협업
  - ▶ 글로벌워크숍 : 9개국 15개 도시 29개 워크숍 콘텐츠 모집 및 운영
  - ▶ 글로벌 해커톤 : 도시 길거리문제 해결을 위한 2박3일 작품 제작 경연대회 운영
- 팹시티 프로젝트 : 시민프로젝트 공모 사업 지원(11개), 오픈소스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0042, The Lab, Infini ZE, Bio-Hackers), 데모데이(3회)
- 팹시티 협의회구성을 통한 기획자문, 성과공유
- 팹랩 교육과정 운영 : 14회, 교육인원 182명
- 팹랩 이용자 수 : 6,799명

○ 혁신파크 포럼 : 국내외 사회혁신가 150여 명 참석

○ 비전화건축·기술 훈련 진행

- 비전화방식 건축훈련(조경) 3단계 운영, 패시브솔라형 비전화자업장 건축 훈련
  - 비전화제품 기술 이전 : 비전화제품 7종 제작 및 사용 훈련
  - 3만엔 비즈니스 제품 구성 훈련(33종), 비전화제품 레퍼토리 개발 훈련(11종)
  - 도시형 유기농법 농장 운영 : 유기순환농법(80평, 65종 재배), 우보농장(50평, 81종) 모내기축제(91명 참여), 성과공유회 개최
  - 공방 운영 (2개소)
  - 비전화 교육 추진 : 비전화인재양성과정 2기 23명 배출, 시민대상 강연 등 34회
  - 공방견학프로그램 운영 : 22회, 262명 참여
- 사회혁신연수시설 운영 (21개 객실 운영)

**5) 흥 보**

- 언론홍보 : 언론보도 602건, 방송 8건
  - 市 은평구 협력홍보 : 내손안에 서울 24건, 서울사미디어메이트 10건, 입주단체 광고 51건
  - 잡지 등 간행물 게재 : 6건
  - SNS
    - 페이스북 370건, 좋아요 수 12,144건 / 인스타그램 176건, 좋아요 수 7,551건
    - 블로그 340건, 방문횟수 130,423명, 순 방문자수: 115,773명
    - 브런치 콘텐츠 업로드 30건 / 페이스북 광고: 18건 / 인스타그램 광고: 5건
  - 파크 홍보 브로슈어 업데이트 제작 : 2019 국문·영문 브로슈어, 가이드맵 제작 완료 및 배포
  - 온라인 뉴스레터 : 8,300여 명 발송, 발간 10회(4월~12월)
  - 홈페이지 운영, 홍보영상 제작 5건, 온라인 영상물 제작 23건
- ※ 서울혁신파크 방문 기관 : 180건, 179개 기관 3,688명 방문(2019년도)

- 동 센터는 2019년 결산 기준 예산의 전용 과다(20건, 1억 6천 8백만원),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모사업의 편법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관	예산과목 (항) 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감액	증액				
공공운영 (센터)	공공요금제	114,730	262		19.04.02	113,194	112,904	290 (0.26%)
	지급수수료	82,603		262	19.04.02	80,803	80,102	701 (0.87%)
	사무관리비	68,901	4,350		19.11.20	65,885	65,606	279 (0.42%)
	인쇄물 및 구입비	5,320	3,150		19.11.20	2,170	2,170	0 (0%)
	지급수수료	82,865	2,582		19.11.20	80,803	80,102	701 (0.87%)
	교육훈련비	21,850	6,340		19.11.20	14,010	13,918	92 (0.66%)
	공공요금제	114,468	771		19.11.20	113,194	112,904	290 (0.26%)
	비용소프트웨어	10,000		6,853	19.11.20	16,353	16,306	47 (0.29%)
	운영수당	13,000		10,340	19.11.20	24,040	23,383	657 (2.73%)
	교육훈련비	15,510	1,500		19.12.04	14,010	13,918	92 (0.66%)
	복리후생비	12,500	52		19.12.04	12,448	11,152	1,296 (10.41%)
	공공요금제	113,697	503		19.12.04	113,194	112,904	290 (0.26%)
	비용소프트웨어	16,853	500		19.12.04	16,353	16,306	47 (0.29%)
	사무관리비	64,551		1,334	19.12.04	65,885	65,606	279 (0.42%)
	지급수수료	80,283		521	19.12.04	80,803	80,102	701 (0.87%)
	운영수당	23,340		700	19.12.04	24,040	23,383	657 (2.73%)

일반운영비 (시설)	일반운영비	교육 훈련비	2,246	755		19.12.04	1,490	1,490	0 (0%)
		공공요금 및 제세	761,730	104,993		19.12.04	656,737	649,246	7,491 (1.14%)
	시설관리비	시설물점검비	187,530	10,504		19.12.04	177,025	177,025	0 (0%)
		복리후생비	39,045	694		19.12.04	38,351	37,561	790 (2.06%)
		시설물개보수	317,162		94,946	19.12.04	412,109	412,109	0 (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18,237		22,000	19.12.04	40,237	39,944	293 (0.73%)	
사업비	홍보 및 대외협력	홍보브랜드 구축	11,000	4,000		19.11.14	7,000	6,792	208 (2.97%)
		홍보 시민 친화	69,000		4,000	19.11.14	73,000	72,379	621 (0.85%)
	입주단체유치및커뮤니티지원	입주단체유치및육성	23,700		2,500	19.12.19	26,200	23,990	2,210 (8.44%)
		혁신성과전람회	47,800	2,500		19.12.19	45,300	38,400	6,900 (15.23%)
		자치회 운영	10,000	900		19.12.04	9,100	7,804	1,296 (14.24%)
		입주단체유치및육성	30,000	6,300		19.12.04	26,200	23,990	2,210 (8.44%)
		혁신성과전람회	26,000		21,800	19.12.04	45,300	38,400	6,900 (15.23%)
	대표전략 프로젝트 운영	이노베이션 캠프	573,000	14,600		19.12.04	558,400	522,642	35,758 (6.40%)
	사회혁신연수 시설 운영	연수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91,500	2,983		19.12.04	301,047	294,316	6,731 (2.24%)
		연수동운영기획	9,547		2,983	19.12.04	12,530	12,338	192 (1.53%)

###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
2016	계	861,373	845,362	16,011	1.9%
	작당시작 프로젝트	300,000	294,161	5,839	1.95%
	리빙랩사회혁신실험(자유주제)	250,000	245,411	4,589	1.84%
	리빙랩사회혁신실험(지정주제)	196,916	194,626	2,290	1.16%
	야외놀이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47,707	47,320	387	0.81%
	<b>야외 시설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b>	<b>39,750</b>	<b>37,702</b>	<b>2,048</b>	<b>5.15%</b>
	혁신가의 무대	27,000	26,142	858	3.18%

2017	계	619,694	606,008	13,686	2.2%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 프로젝트	210,660	208,762	1,898	0.90%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프로젝트	279,934	271,319	8,615	3.08%
	<b>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b>	15,000	12,971	2,029	13.53%
	중소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13,000	12,844	156	1.20%
	야외공간활성화프로그램	67,000	66,104	896	1.34%
	뽀짝놀이터 프로그램	34,100	34,008	92	0.27%
	서울혁신파크 협력 프로젝트	30,000	29,616	384	1.28%
	비전화공방서울 생활커뮤니티 지원사업	19,500	18,685	815	4.2%
2018	계	159,881	156,095	3,786	2.4%
	팍시티 프로젝트	10,000	9,579	421	4.21%
	시민공원시설물활성화	19,380	19,238	142	0.73%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53,000	52,164	836	1.58%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7,500	7,472	28	0.37%
	<b>자업자득 스타트업</b>	10,000	8,690	1,310	13.10%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60,001	58,952	1,049	1.75%
2019	계	117,400	103,085	14,315	12.19%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30,000	29,607	393	1.31%
	식문화 혁신 프로그램	16,500	15,206	1,294	8.09%
	대시민 프로그램 (방문자 프로그램)	9,000	9,000	-	-
	팍시티 프로젝트	31,400	31,217	183	0.58%
	<b>비전화제작자 자립지원</b>	30,500	18,055	12,445	40.83%

- 입주단체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단체의 과도한 체납(2020년 5월 기준,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6천 7백만원)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 실태를 보인 바도 있음.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 현황〉

#### 체납 개요('20. 5월 기준)

- 체납 단체 수 : 총 36개 (사용료 17개 단체, 관리비 16개 단체, 세외수입 체납 3개 단체)
- 체 납 액 : 금 67,127,400원  
(사용료 52,302천원, 관리비 9,775천원, 세외수입 체납 5,484천원)

**사용료 체납 현황(서울혁신센터 관리)**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17개 (퇴거단체 6개 포함)	51,868,020	· 납부독촉 / 대관정지 / 공모사업 지원불가 통지 공문 시행 ·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 소액심판 청구 진행절차 검토 중

**관리비 체납 현황(서울혁신센터 관리)**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16개 (퇴거단체 4개 포함)	9,775,310	· 납부독촉 / 대관정지 / 공모사업 지원불가 통지 공문 시행 ·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 소액심판 청구 진행절차 검토 중

**서울혁신파크 세외수입(‘16년도 관리비) 체납 현황**

(‘20.05.31 기준, 단위: 원)

단 체 수	체납건수	미납 총액	조 치 현 황
3개 (퇴거단체 3개)	20건	5,484,070	· 38세금징수과와 함께 재산조회 및 고지서 발부를 통해 납부 독려 · 유선연락을 통한 조속한 납부 독려

※ 해당 내역은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건으로 세외수입 예산(지난연도수입액)에 포함되어 직접 징수 관리 중

- 특히, 2020년도 동 센터의 사업비(18억6천만원)의 34.3%(6억 4천만원)를 차지하는 비전화사업단의 경우 2017년 4월 일본비전화 공방과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서울혁신센터에 동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나,
  - 동 협약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했던 협약으로 사료되는바, 하자있는 협약으로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비전화공방서울」 운영협력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일본비전화공방(株式会社非電化工房)은 비전화공방서울의 원활한 운영 협력을 위해 양자간에 본 협약을 체결한다.

1. 비전화공방서울은 일본비전화공방이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에너지와 화학물질,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안전·행복지수를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됨을 목표로 한다.
2. 서울시와 일본비전화공방은 기술지도·개발, 기계제작, 농장운영, 건축물 설치 및 활용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3. 서울시와 일본비전화공방은 청년의 자립력 향상과 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 등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4. 서울시와 일본비전화공방은 비전화공방서울의 스텝과 비전화제작자의 한국 내 연수와 일본현장연수, 한국내외의 활동단체들과의 교류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5. 서울시와 일본비전화공방은 활동 기록 및 아카이빙, 기술정보 게시 등 홍보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6.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기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非電化工房ソウル'の運営協力のための協約書

ソウル特別市と日本非電化工房(株式会社非電化工房)とは、非電化工房ソウルの円満な運営協力のために両者間で本協約を締結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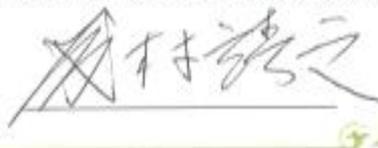
1. 非電化工房ソウルは、日本非電化工房がこれまでに蓄積してきた技術と経験を活用して、エネルギーと化学物質、お金の過度に依存せずに生活の安全・幸せ度を上げるライフスタイルをソウル市民に提案し、若者が失いかけた希望を取り戻せる、そういう場所を目指す。
2. ソウル市と日本非電化工房は、技術指導・開発、機械製作、農場運営、建築物の設置およびこれの活用などの活動に、互いに積極的に協力する。
3. ソウル市と日本非電化工房は、青年の自立力養成や市民へのライフスタイル提案などの教育プログラムの活性化に、互いに積極的に協力する。
4. ソウル市と日本非電化工房は、非電化工房ソウルのスタッフや非電化製作者の韓国内研修や日本現場研修および韓国内外の活動団体との交流活性化に、互いに積極的に協力する。
5. ソウル市と日本非電化工房は、活動記録やアーカイブ、技術情報開示などの広報活動に、互いに緊密に協力する。
6. この協約書に明記されていない事項に関しては、相互に協議して決定する。

2017. 4. 10.

서울특별시(ソウル特別市)  
시장 박 원 순(市長 朴元淳)



일본 비전화공방(日本非電化工房)  
대표 후지무라 아스유키(代表 藤村 靖之)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동 협약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18억원 규모이며,

### 〈서울혁신센터 비전화공방 사업비 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액(A-B) (반납액)	집행률(B/A)
○ 2017년				
<b>계</b>	<b>501,201</b>	<b>498,000</b>	<b>3,200</b>	<b>99%</b>
1. 공방 설치 및 운영	104,112	102,446	1,666	98%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 육성	48,515	48,495	20	100%
3. 국내외 교류	42,725	41,575	1,150	97%
4. 홍보 및 아카이빙	56,220	56,175	45	99%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249,629	249,309	320	99%
○ 2018년				
<b>계</b>	<b>615,020</b>	<b>576,726</b>	<b>38,294</b>	<b>94%</b>
1. 공방 설치 및 운영	78,402	78,380	22	100%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육성	96,393	83,546	12,847	87%

세부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액(A-B) (반납액)	집행률(B/A)
3. 국내외 교류	41,077	41,042	35	100%
4. 홍보 및 아카이빙	48,887	48,683	204	100%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350,261	325,075	25,186	93%

○ 2019년

계	640,000	562,511	77,489	88%
1. 공방 설치 및 운영	70,750	70,164	586	99%
2.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육성	85,852	69,074	16,778	80%
3. 국내외 교류	56,834	50,154	6,680	88%
4. 홍보 및 아카이빙	44,279	35,852	8,427	81%
5. 사업단 구성 및 운영	382,285	337,267	45,018	88%

- 최근 3년간 일본 비전화공방 대표(후지무라 야스유키)의 30회 가까운 여비 2천 8백만원을 포함한 연수비 등에도 1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후지무라 야스유키(경영총괄) 관련 예산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총액	예산과목	편성액	집행액	비고	
2017	16,429	인재양성 과정운영	12,180	9,000	9회 집행 (4~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숙박비)	16,648	7,429	월별	집행액
					4월	1,071
					5월	1,081
					6월	1,051
					9월	1,091
					10월	1,210
					11월	1,091
12월	834					
2018	40,147	인건비	30,350	30,317	10회 집행 (3~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18,640	9,830	월별	집행액
					2월	898
3월	1,091					

		숙박비)			4월	1,244
					5월	1,232
					6월	1,270
					9월	1,511
					10월	1,332
					11월	1,252
2019	43,110	인건비	33,008	32,701	10회 집행 (3~12월)	
		해외연수비 (방문여비, 항공비, 숙박비)	18,170	10,409	월별	집행액
					1월	567
					2월	893
					3월	1,289
					4월	1,280
					5월	1,267
					7월	1,231
					9월	1,205
					10월	1,628
					11월	1,049

○ 동 센터의 비전화사업단에서는 소수의 비전화 제작자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연수 등을 시행해 왔음.

### 〈최근 3년간 사업단 국외여비(연수비 및 여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지급금액	국외연수비(사업단, 제작자 등)	국외여비(사업단)
2017	22,105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 21,944,766원 ○ 비전화사업단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 기 간 : 2017.2.2.~2.17.(15박16일) - 목 적 :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일본 비전화공방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5인 - 집행액 : 10,000,600원 ○ 1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7.7.3.~7.19. - 목 적 : 1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1인, 비전화제작자 11인 - 집행액 : 10,472,083원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 1,632,0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7.2.2.~2.9(7박8일) - 내 역 : 272,000원 X 4인 - 지급액 : 1,088,0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7.2.2.~17 (15박16일) - 내 역 : 544,000원 X 1인(건축담당) - 지급액 : 544,000원

2018	12,233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11,960,745원 ○ 2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8.7.9.~7.20.(11박12일) - 목 적 : 2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1인, 통역 1인, 비전화제작자 12인 - 집행액 : 11,960,745원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 272,12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8.7.9.~7.20(11박12일) - 내 역 : 272,120원 X 1인 - 지급액 : 272,120원
2019	16,837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 16,117,733원 ○ 3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현장 연수 - 기 간 : 2019.6.10.~6.17.(7박 8일) - 목 적 : 3기 비전화제작자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연수 진행 - 참석자 : 사업단 직원 2인, 통역 2인, 비전화제작자 11인 - 집행액 : 11,780,480원  ○ 비전화제품/기술 서울형 레퍼토리 개발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연수 - 기 간 : 2019.8.19.~8.29.(7박 8일) - 목 적 : 일본비전화공방에서 열리는 시민 워크숍 참가 등 - 참석자 : 사업단 1인, 제작자 1인, 통역 1인 - 집행액 : 4,337,253원	<input type="checkbox"/> 총 지출액 : 719,60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9.6.10.~6.17(7박8일) - 내 역 : 248,070 X 1인 - 지급액 : 248,070원  ○ 일본 비전화공방 현장 연수 국외여비 - 기 간 : 2019.6.10.~6.13(3박4일) - 내 역 : 124,040 X 1인 - 지급액 : 124,040원  ○ 비전화제품/기술 서울형 레퍼토리 개발 직원 국외여비(1인) - 기 간 : 2019.8.19.~8.29 (10박 11일) - 내 역 : 347,490 X 1인 - 지급액 : 347,490원

- 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시민 전체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유사사업을 기후환경본부(대체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담당<sup>6)</sup>하고 있는바,
-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비전화공방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사무 수탁시 없었던 사무로 수탁 사무의 변경, 신설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6) 환경정책과(원전하나줄이기팀) 에너지시민협력과(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협약에 근거한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조례 개정과 위탁사무 정비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30.>

③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30., 2019. 12. 31.>

1.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더불어, 연수시설의 재위탁 문제, 조례에 근거 없는 연수시설의 운영 문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센터 연수시설 운영 현황 (2018~2019)〉

#### 연수동 기본 현황

- 운영목적 : 사회혁신가 및 유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운영방법 : 용역운영(입찰)
- 운영예산 : 2018년 228,938천원 / 2019년 291,500원
- 운영단체 : (주)소셜스티치 (2018.04.01.~ 2019.12.31)
- 이용대상 : 혁신파크 입주단체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및 외부단체
- 공간현황
  - 개별객실 : 1인실 4개, 2인실 14개, 4인실 2개, 다인실1개
  - 공용공간 : 1층(라운지, 세미나실, 공용부엌, 세탁실), 2~3층(코워킹)

**이용 절차 및 이용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10인실
요금(원)	40,000	40,000	80,000	120,000

※ 50% 할인가 적용 : 서울혁신파크 관계자 및 입주단체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 100% 할인가 적용 : 서울혁신파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핵심 관계자 대상

**사회혁신 연수프로그램('19년)**

- 웨프가 투숙객들에게 전통시장의 국내 먹거리를 활용한 요리 제공
-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투숙객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시민 참여 프로그램운영(친환경, 자연보호 메시지를 담은 기획 전시)
-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제품 개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한 제품을 고객 경험 제공)
- 50+센터와 함께 하는 메이드 프로그램 등

○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혁신파크와 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역할의 모호성은 크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은 부실하며

○ 동 센터의 주된 혁신 사무가 마치 정체성이 불명확한 입주 단체(혁신)의 상시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등 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743	6,234	8,517	7,535	7,318	7,548	39,89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77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혁신센터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사업명 : 서울혁신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 시설규모 : 29개동 연면적 48,898.47㎡
- 운영인력 : 89명
- 위탁기간 : 3년(2021.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7,823백만원(2021년)

## 나. 위탁사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민간위탁 추진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 2015. 4. 1. ~ 2018. 3.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재위탁
  - 위탁기간 : 2018. 4. 1. ~ 2020. 12. 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 공모절차에 의한 적격자 심의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활동단체를 지원·연계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사회혁신담당관 혁신파크팀 강윤애(☎02-2133-6324)